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법률(안) 분석 및 고찰

이대성*, 이기복, 정익, 이종희, 노승국, 김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dslee@kaeri.re.kr

1. 서론

지난 2016년 8월 11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2016-403호 공고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에 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7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장치로서 본 법률안이 나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법률안의 제반 내용을 분석하고 법정책적 고찰을 담고자 한다.

2. 본론

2.1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법률(안) 개요

본 법률(안)은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벌칙까지 6장으로 구성되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부지적합성조사절차, 관리시설 건설운영, 보칙 및 벌칙으로 나뉜다.

-총칙 및 정의

핵심내용을 보면, 총칙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범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관리의 개념은 운반,저장, 처분과 이를 위한 활동으로 하며,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관련부처의 결정전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본 법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이행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우선적용원칙을 정해두었다(제4조).

-부지조사와 선정

부지조사와 선정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자격과 구성,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해 두었다(제11조). 부지적합성 조사절차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하고,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한 예비부지를 선정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당해 장관은 원자력진흥위원회, 국회와 당해 지차체에 보고의무를 두었다(제15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및 관리사업자

특징적으로 총리산하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두고, 당연직위원으로 각 부처의 장관과 위촉위원을 두어 지역지원방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다(제16조).

관리사업자의 관리시설건설, 운영에 대한 안전성, 관리기준 및 기술확보, 해외협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2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법률(안)고찰

연구시점 현재 본 법안은 정부부처의 입법예고로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정책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고찰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분류권한

법안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본 법안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본 법안의 관리대상이므로 위임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방사성폐기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원자력안전법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기준을 담는 것도 타당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본래목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대상물질, 규제방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본 법안에서 분류권한을 보유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찰 2.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용 조항

조항제3조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원자력진흥법 제4조제7호에 따른 결정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문은 "원자력진흥법... 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결정이 있기 전까지..." 로 되어 있다. 원자력진흥법상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법문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법문은 여러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과 그에 관련사항을 결정토록 권한이 부여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권한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찰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효력

조항 제4조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그 이행 절차에 대해 타법보다 우선적용됨을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본 법률안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자 필요한 조항으로 이해된다. 한편으론,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별도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이 없다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관리되며, 본 법안의 적용대상이다. 제3조의 사용후핵연료적용조항과 제4조의 우선효력적용조항의 동시효력으로 인해 원자력진흥법상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권이 그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본 법률에 의해 영구히 인간생활권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일정시간 이내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는다면 위 두 조항의 효력으로 처분대상으로 확정이 되는 법률효과를 갖게 것이다.

-고찰 4.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본 관리위원회는 부지조사, 선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산자부 장관의 최대한 존중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부지선정등의 선명성을 위해 당해 위원의 판단의 중립성을 대내외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위원 전원에 대해 산자부장관이 위촉, 지명토록 되어 있어서, 결정의 선명성에 대해 외부도전 시에 취약할 수 있다. 위원선정 방식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찰 5. 예상부지의 확정 절차

유치희망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경우 관리위원회가 예정부지를 선정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며, 그에 따라 당해장관은 통보 및 보고등의 절차후 확정, 고시토록 하고 있다(제15조).

유치희망 지역이 없는 경우의 예상부지의 확정과 관련하여 현행 절차를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 선정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절차를 법률에 넣어둔다면 당해 조항의 실효적 기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찰 6. 벌칙조항의 상당성 검토

조항 제24조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행위가 "위험하게 하다"라는 추상적임에 비해 그 처벌은 과중하다는 측면에서 벌칙조항의 상당성 검토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위태롭게 하다."라는 등의 처벌의 상당성을 보강할 여지도 있다.

3. 결론

본론에서 입법예고의 절차로 공개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법률(안)에 대한 분석과 법정책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했다. 본 법률이 확정될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조사 및 선정, 관리사업자의 권한, 유치지역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근거법률로서 기능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 절차로서 민주성 및 각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중립성을 잘 보장해 주면서도, 국가난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고찰된 내용들이 적절히 가미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1] 함철훈, 원자력법제론, 법영사, 2009.2.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5.2.
[3]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6.1.